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2
----------	-----

2023년 2월 2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년 10월 17일, 김길영 의원

나. 회부일자: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일자: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조례는 태양광 설비 관련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지원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의 규정을 위해 제정('19.7.18.)되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재정 지원,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서울시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근거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나. 기타: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가. 제안 경위 및 주요 내용

- 서울시는 2019년 이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등을 수립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태양광 조례」)가 태양광 설비 관련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정성 확보, 시의 지원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9.7.18.) 되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이하 「에너지 조례」)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서울시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태양광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태양광 조례」와 「에너지 조례」 비교

- 「태양광 조례」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적용 대상(제4조), 책무(제5조), 설치기준의 마련(제6조)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 제6조에서는 태양광 설비 시공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

을 마련하고 이때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에너지 조례」 제17조제3항¹⁾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음.

다만, 「에너지 조례」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이나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기준 수립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고 있음.

- 제9조는 시장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 조례와 「에너지 조례」의 유일한 중복 규정이라 할 수 있음.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조(제 목)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목적: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정의
제3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신재생에너지 시공 관련 규정 준수
제4조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 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제5조 (책무)	-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
제6조, 제8조 (설치기준 마련 및 권고)	- 태양광 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 기준 마련 - 제4조 및 제4조 이외의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제6조 규정 준용 권고
제7조 (안정성 확보)	- 전기적 안정성 확보 통해 시민 안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관리
제9조 (태양광 설비 설치 운영지원)	-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 가능
제10조 (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1) 「에너지 조례」 제17조제3항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검토의견

-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²⁾의 예산 규모는 2016년 45억원에서 2019년 245억원³⁾⁴⁾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조례⁵⁾」와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⁶⁾」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었음.

2019년 당시 태양광 보급사업의 규모에 비해 관련 조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지관리 등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태양광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동 조례제정이 태양광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본 폐지조례안은 제안 사유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재정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관한 사항이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양광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 조례」의 설치기준의 마련(제6조제1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외에 “책무”, “안전성 확보”, “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에너지 조례」 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였음.

4) 2017년 91억원, 2018년 298억원

5) 제4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6) 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

또한, 서울시는 「에너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역(서울시)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고시」(「태양광 설비 조례」 제6조제1항 관련)를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고 있음.

-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의견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 있는 보급으로 정책 방향성이 전환되었고, 「태양광 조례」 적용대상이 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국한되며, 「에너지 조례」 상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이 존재하여 이미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등이 있고, 이 중 태양광 외의 신·재생에너지는 보편적 보급·확산이 어려워 태양광과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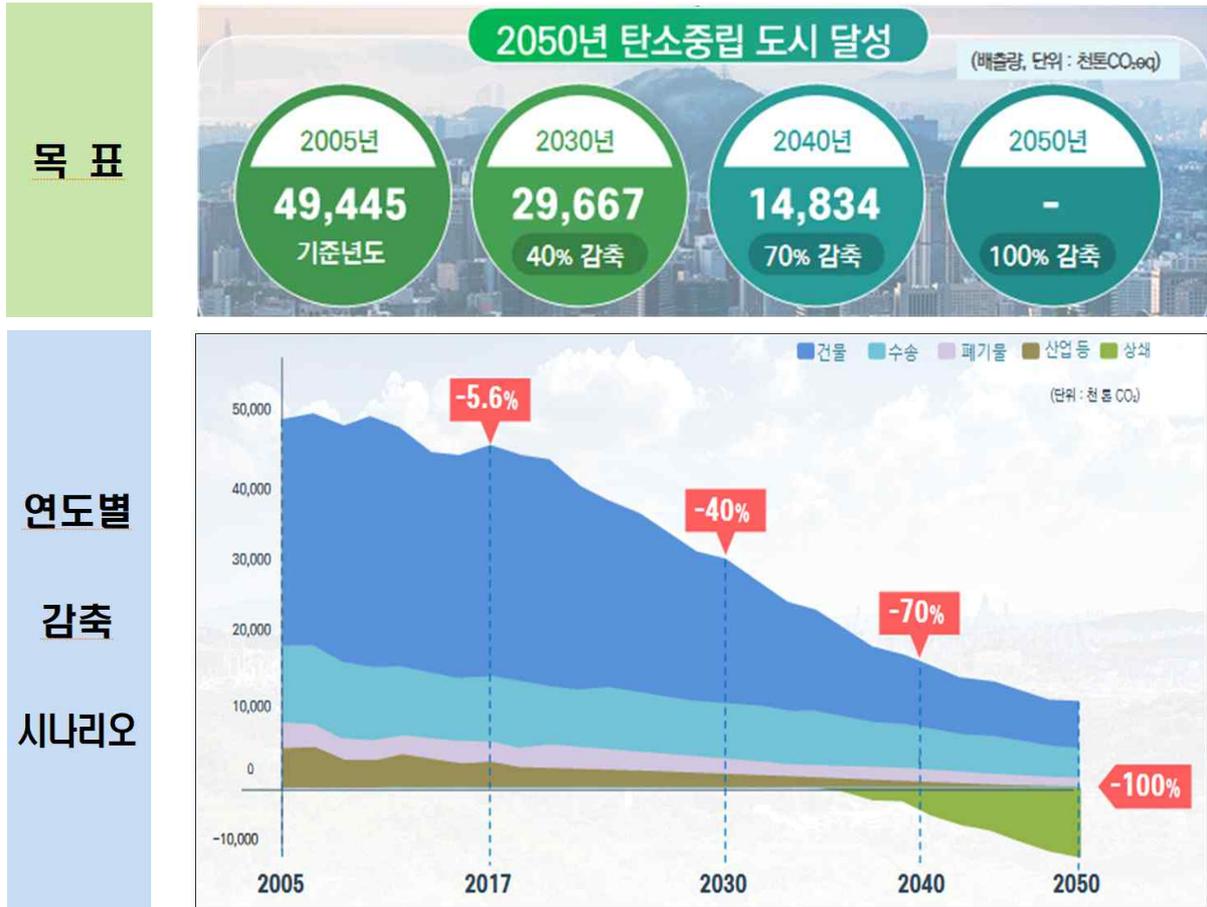
특히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⁷⁾ 달성을 위한 태양광 보급목표를 5GW로 설정하였으나 지난 20년간의 보급실적은 0.36GW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이미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확대 보급은 불가피할 것인바⁸⁾, 중복 규정 등을 근거로 「태양광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태양광 조례」 폐지에 앞서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지원(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외의 「태양광 조례」의 세부 내용을 「에너지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7)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환경정책과-1513, 21.1.18) 상 태양광 보급목표:
(’22) 0.5 GW → (’30) 1.5 GW → (’40) 3.5 GW → (’50) 5 GW

8) 서울시 태양광 설치 실적(누적): 0.36GW(’03년~’22년 9월말 기준)

붙임 1.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상 목표 및 감축 시나리오



☐ 부문별 주요지표

부 문	지 표	달성 목표
그린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설치	2050년까지 태양광 5GW 설치 * ('22.) 0.5GW → ('30.) 1.5GW → ('40.) 3.5GW
	연료전지 보급확산	2050년까지 연료전지 1GW 설치 * ('22.) 315MW → ('30.) 540MW → ('50.) 1,000MW

붙임 2. 서울시 태양광 보급 실적

(단위 : 개소, GW)

구 분	'03~'11	'12~'14	'15~'17	'18	'19	'20	'21	'22년*	계
개소수	1,641	4,773	38,413	44,413	33,743	16,203	8,735	606	148,527
용 량	0.023	0.048	0.080	0.052	0.048	0.055	0.041	0.014	0.361

*: '22년 9월 말 기준 실적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2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김혜지,
남창진, 도문열,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효원,
장태용, 채수지, 최민규,
허·훈, 황철규 의원(29명)

1. 제안이유

- 동 조례는, 태양광 설비 관련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지원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의 규정을 위해 제정('19.7.18.)되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재정 지원,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서울시 사무가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근거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